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01
----------	-------

발의연월일 : 2025. 7. 1.

발 의 자 : 서범수·장철민·박용갑  
우재준·허영·김소희  
송석준·김태호·정성국  
유용원·정연욱·조인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함.

한편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시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국가·일반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고,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기업체에 임대할 건물의 건축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을 용지비용까지 명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육성·개발 및 도시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단서에”를 “단서 및 제2항에”로, “보조”를 “보조 및 지원”으로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용지비용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의8제6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생략)</p> <p><u>&lt;신 설&gt;</u></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 ⑤ (생략)</p> <p>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p>	<p>제28조(비용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용지비용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단서 및 제2항에----- ----- <u>보조 및 지원</u>----- ----- -----.</p> <p>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u>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u> <u>지원할 수 있다.</u></p>	
---	--